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규정례에 따른 신고자 보호
수준 강화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7440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규정례에 따른 신고자 보호 수준 강화 ...	4
(1)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확대	5
(2) 보호조치 신청 시 각하 사유의 축소	13
(3) 보호조치결정 내용의 확대 등	18
(4)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	23
2. 기타 정비 사항	29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6. 3. 12.
3. 회 부 일 : 2026. 3. 13.

II. 제안이유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요건 및 조치 결정과 같이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범위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결정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확대(안 제17조)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범위를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로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도 확대하여 그 불이익조치가 발생하기 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호조치 신청 시 각하 사유의 축소(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 1) 보호조치를 신청한 공익신고자 등의 신뢰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중단하면서 그 신청을 각하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사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2)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하면 각하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관련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각하 사유를 신고자 보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좁힘.

다. 보호조치결정 내용의 확대(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등을 제외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원상회복, 차별 지급된 보수 등의 지급 또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금지 외에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의 유형을 추가함.

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 및 그 미이행 시 벌칙 마련
(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에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 의무의 구속력을 확보함.

IV. 검토의견

1.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규정례에 따른 신고자 보호 수준 강화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례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를 축소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수준에 맞추어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 비교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 규정
조항	개정내용	
안 제17조	■ 보호조치 신청 요건을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	제62조의2제1항
안 제18조	■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 축소 - 공익신고가 조사중단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제62조의2제3항
안 제20조	■ 보호조치결정 내용에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추가	제62조의3
안 제22조의2 안 제30조제4항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미이행시 벌칙 신설	제62조의5 제90조제3항

(1)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확대

- 개정안은 보호조치 신청 요건을 현행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뿐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u>보호조치</u> 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 7.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u>보호조치</u>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 7. (현행과 같음)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 ----- ----- 받은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

② 공익신고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

1.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신청

2.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이익조치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청

③ -----
-----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
-----.

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

제1항 및 제2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

---- 받았는지 여부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u>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u> <u>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u>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u> 제23조(<u>불이익조치 추정</u>)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2. (생략) 3. <u>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u>	제23조(<u>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u>) ----- ----- ----- --- 1. 2. (생략) <u><삭 제></u>
---	--

□ 현행법 제15조¹⁾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²⁾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 제17조³⁾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제22조⁴⁾는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

-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 반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규정은 없으나,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비교 >

구분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조문	제17조	제22조
신청요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공익신고 준비행위 포함)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 준비행위 포함)
신청기간	1년 이내 신청	-
인용결정	보호조치결정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미이행시 제재	- 이행강제금(제21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제2항제2호)	- 불이익조치 추정(제23조제3호)

- 그런데, 「부패방지권익위법」⁵⁾은 부패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이익조치가 있기 전에도 신분보장 신청인이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같이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의 범위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등의 사전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 「부패방지권익위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여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이익조치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임⁶⁾.

<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개정안 문언 비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

6)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442호)도 함께 제출되었음.

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신청 2.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이익조치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청 ③ · ④ (생략)
--	---

□ 다만, 현행법상 불이익조치 금지의 신청 요건은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인 반면, 개정안의 보호조치 신청 요건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완화하고 있는바⁷⁾,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불이익조치의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객관적 판단 기준을 축적·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권익위에 따르면,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는 불이익조치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이나,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불이익조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함.

(2) 보호조치 신청 시 각하 사유의 축소

- 개정안은 ① 공익신고가 조사중단 등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그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보호조치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사유를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u>	2. ----- ----- <u>경우로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u>기각결정</u> 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 ----- <u>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u> ----- -----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u>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u> 에	5. ----- - <u>권고결정을 한 사항</u> -----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u>신청한</u> 경우	6. ----- <u>신청하여 그 심의가 진행 중인</u> ---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7.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 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보 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조부터 <u>제20조까지</u> 및 <u>제21조</u> 에 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u>불이 익조치를 한 자</u> 에게 모두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 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 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u>제20조까지, 제21조 및 제2 2조의2</u> ----- ----- <u>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 상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u> -----. ----- -----.

□ 현행법은 ①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 제1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⁸⁾에 해당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
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
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이 조사 또는 수사를 중단할 수 있고, 보호조치 신청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를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제절차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⁹⁾.

□ 그런데,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각하 사유와 비교하면,

①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는 신고에 대해서도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여 신고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보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②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만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p.91

<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각하 사유 비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u>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u>	4.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u>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u>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u>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6. <u>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u>
	7. 공익신고가 <u>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한편,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그 구제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로만 한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구제절차가 기각된 경우는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3누59850 판결¹⁰⁾)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같이 보호조치 각하 사유를 축소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등의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10)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조치의 각하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와 ‘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를 문언 그대로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하기만 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그 결과가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받은 경우까지도 포함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에서 제7호를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7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보호조치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하사유로 두고 있는 반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일단 현재 먼저 진행중인 다른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공익신고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여지가 있고 피고의 보충적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행정조직 역량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피고의 재량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령의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의 문언이나 목적,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의 ‘다른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구제절차가 계속중인 경우’로만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구제절차가 기각된 경우’는 그러한 각하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누59850 판결,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23. 9. 1. 선고 2022구합77569 판결)

(3) 보호조치결정 내용의 확대 등

- 개정안은 보호조치결정의 내용을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 -----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	2. -----

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
의 지급 <후단 신설>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신 설>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
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
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
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
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
---.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

----- 받은 경우 또는 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하는 결정(이하 “권고결정”이
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보호조치결정, 권고결정 또
는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

-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제외한다)-----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삭제>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

----- 권고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

-----.

아니 된다.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조치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현행법은 보호조치결정의 내용으로 ① 원상회복 조치, ②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③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¹¹⁾.

<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호조치결정 비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보호조치결정 등)
1. 원상회복 조치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1) 권익위에 따르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예로 성과평가등급 재산정 요구 등이 있음.

□ 또한, 현행법은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을 하나의 항에서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3항).

(4)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

□ 개정안은 ①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이고, ②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③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권익위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권익위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u>금지</u>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 - <u>절차의 일시정지</u>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 -----

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②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의2-----
절차의 일시정지----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제27조(구조금)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나.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
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사유를 방치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3.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구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30조(벌칙) ① ~ ③ (생략) <u><신설></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2조의2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

□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권익위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함.

□ 그런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불이익조치 절차가 종료되면 공익신고자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이익조치 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이유로 「부패방지권익위법」¹²⁾¹³⁾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불이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

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두고 있으며¹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같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하려는 것임.

- 실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권익위의 처리 기간이 최근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제도의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처리 기간 >

연도	처리건수		평균 처리기간	
	전체	90일* 초과 사건	전체	90일 초과 사건
2023	109건	66건(60.55 %)	182.0일	277.8일
2024	128건	46건(35.94 %)	100.2일	223.9일
2025	286건	48건(16.78 %)	50.2일	208.3일

*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2016년 3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

14)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최근 3년간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각하	종결
2024	1	1	-	-	-	1
2025	5	4	-	-	-	4
2026.5.	3	4	2	-	-	2

- 이에 개정안은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참고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도입 내용을 포함한 동 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현재 본회의 계류 중¹⁵⁾이므로, 본회의 심사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안번호 제2211547호)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상임위 심사기간(2026.3.23.)이 경과되어 법사위에 회부었고,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경과되어 2026.6.23. 본회의 부의 간주됨.

2. 기타 정비 사항

-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등이 조사기관 등의 조사절차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나열하여 명시하는 등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체계·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제11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u>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u>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 ---- <u>변호사(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내부 공익신고자가 <u>해당</u>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u>보호조치·보상금</u>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2. ----- <u>제1호의</u> ----- ----- <u>보호·보상금</u> -----
3. <u>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u>	3. <u>내부 공익신고자가 제1호의</u>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 ④ (생략)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
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
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
리인은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
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
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공익신고를 하기 위하여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
-----.

제23조(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
계의 추정) -----

1. -----
---- 공익신고등-----

<u>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u> 2. (생략) <u><신설></u> 3. <u>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u> 4.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u>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u>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 2. (현행과 같음) <u>2의2.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u> <u><삭제></u> 4.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 -- <u>제3항</u>----- ----- ----- ----- ----- -----. ② <u>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특별보호조치결정</u>----- -----. ③ (현행과 같음)
--	---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규정 명확화(안 제8조의3)

- 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은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① 제8조

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서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제1호), ②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제2호), ③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제3호)로 나열하고 있음.

- 권익위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16) 및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17)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 및 조력 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법 문언상 제1호의 경우만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되고, 제2호 및 제3호는 일반적인 신고에서도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권익위 위원장이 위촉한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에 의한 조력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공익신고의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접수일 기준)

연도	'22	'23	'24	'25	'26. 6.
자문변호사 대리신고	30	41	46	63	89
외부변호사 대리신고	23	33	42	32	2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16)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2조(구성 및 인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 라 한다)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대한변협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17)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2조(수당 지급 대상) 이 규정은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대상으로 한다.

-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 지원 규정이 비실명 대리신고(법 제8조의2)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변호사의 범위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규정 명확화(안 제11조)

- 현행법 제11조제1항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고, 동 조 제2항은 공익신고자등이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공익신고자등이 신청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조문 이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 명확화(안 제23조)

-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조문 내용에 맞추어 조 제목을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목과 내용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안 제31조제2항)

- 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별보호조치¹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또한,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에 따른 벌칙 부과 시점이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¹⁹⁾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별보호조치결정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점이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한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이후 미이행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문 의 처
02)6788-5107